

유권자 등록 방법

온라인

온라인 VoteWA.gov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 면허증 또는 신분증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선거를 위해서 4월 17일 까지 온라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Kingcounty.gov/elections에서 서류를 다운하시고, 인쇄하시어 저희 사무실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특별 선거를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4월 17일 까지 받아야 합니다.

직접방문

귀하께서는 4월 25일 선거일까지 저희 투표 센터중 한곳을 방문하시어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 근무 시간과 위치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 kingcounty.gov/election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

투표센터는 도움이 필요하신 유권자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청각 또는 큰 활자 투표용지, 그리고 다른 보조 장비를 갖춘 투표 기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선거국 직원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투표 센터에서 등록하시고 투표용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킹카운티 선거국

919 SW Grady Way, Renton, 98057
주중, 4월 5일 - 24일, 오전 8:30분 - 오후 4:30분
선거일, 4월 25일, 오전 8:30분 - 오후 8:00시

온라인 투표용지 이용하기

온라인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시어 이용하십시오! 장애가 있으시거나 또는 온라인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표기하시고 인쇄하실 수 있고 또는 공백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시어 직접 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용지 이용은 시각 장애인들이 비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등록된 모든 유권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 서명 그리고 지시사항을 따라 투표용지 묶음을 준비하시어 평소처럼 우편 반송 또는 투표함에 넣어 주십시오. 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8시 정각에 닫습니다.

귀하의 투표 용지를 kingcounty.gov/elections/obmp에서 받으십시오.

위의 선택사항 중 귀하께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2023년 4월 25일 특별 선거

킹카운티 공식 지역 유권자 팸플릿

킹카운티와 공립병원 제4지구 요청에 따라 제작됨



투표용지를 추적하기가 보다 쉬워졌습니다!

kce.wiki/MyVoterInfo에서 투표용지에 관한 문자 또는 이메일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우편으로 투표용지 반송하기

우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를 가능한 한 빨리 반송하시길 강력히 권유해 드립니다. 투표용지의 소인은 반드시 선거일 4월 25일까지 찍혀야 합니다.



투표함에 반송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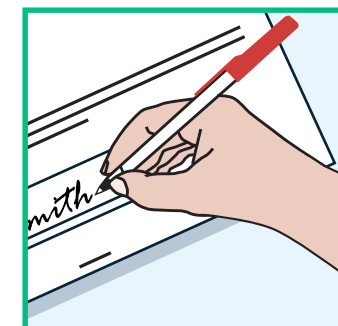
투표함 목록은 다른 삽입지에 있습니다.

투표함은 4월 25일 오후 8시 정각에 닫습니다.

귀하의 서명은 중요합니다. 일치된 서명을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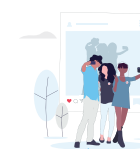
귀하의 서명은 필기체나 또는 읽을 수 있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희 서류에 있는 서명과는 일치해야 합니다. 저희 서류에 등록된 서명을 확실히 모르실 경우, 저희가 많은 서명을 면허청에서 받기 때문에 귀하의 운전 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 확인을 권유드립니다.

서명 갱신을 하시어 저희가 귀하의 투표 집계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kingcounty.gov/elections/signature를 방문하시어 귀하의 서명과 그 서명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십시오.



저희와 함께 소셜 미디어를 하세요

twitter.com/kcelections
facebook.com/kcelections
instagram.com/kcelections



귀하의 투표 셀피를 #votingselfie
저희와 공유하세요!

@kcelections



선거운동에 기부 하셨습니까?

후보자와 선거법안의 기부자 보기

공개 정보 위원회

www.pdc.wa.gov | 수신자 부담 전화1-877-601-2828

206-296-VOTE (8683) | elections@kingcounty.gov

kingcounty.gov/elections | 919 SW Grady Way, Renton, WA 98057



투표하세요!

발의안 제1호
위기 보호 센터 추가부담금

킹카운티 의회가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19572호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발의안이 승인되면, 카운티 전체에 위기 보호 센터 네트워크, 주거 치료 증가를 포함한 행동 건강 및 자본 시설; 이동식 위기 보호; 퇴원 후 안정화; 그리고 인력 지원의 자금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는 2024년부터 추가로 구 년간 감정 가격 \$1,000당 \$0.145의 부동산세 추가 부담금 징수와, RCW 84.55장에 따라 2024년 추가 부담 금액을 2025-2032년 연간 증가액 계산의 기준으로 하며, 그리고 RCW 84.36.381 에 따라 적절한 연장자, 재향 군인 및 장애인의 면제를 재가합니다. 이 발의안을:

승인합니다
거부합니다

이 발의안 전문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찬성 진술	제출자: Girmay Zahiray, Dow Constantine, Dana Ralph www.yeskcprop1.com
본 발의안을 통해 청소년 전용 위기센터를 비롯하여 지역 행동건강위기센터 5곳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금은 또한 늘어나는 인구의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치료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 인력을 채용 및 보유하게 할 것입니다. 골절 치료를 위해 긴급 진료소를 방문할 수는 있지만 킹카운티 전역에 방문 가능한 행동건강 위기보호센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발의안 제1호는 진료에 필요한 장소와 그러한 진료를 제공하는 인적 자원에 투자합니다. 현재 위기에 처한 주민들은 치료를 위해 평균 44일을 대기하며 종종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값비싼 응급실이나 구치소를 전전합니다. 발의안 제1 호는 입증된 결과와 함께 보다 경제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법 집행 기관과 긴급 구조대원들은 전담 직원과 치료 센터를 통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급박한 공공의 안전상 요구에 다시 집중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 이 법안을 지지합니다. 발의안 제1호는 평균 주택 소유주의 경우 월 \$10 정도의 비용이 들며 저소득층의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기금은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감사됩니다. 지지자: 최고 행정관 Dow Constantine 및 카운티 의회,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 MLK 노동위원회, SEIU 1199NW, 법 집행 기관, 소방관 및 긴급구조대원, 카운티 전역 시장, 지역구 민주당 의 다수!	

반대 진술에 대한 반증

가족, 긴급 구조대원 및 회복 치료를 원하는 분들은 인력이 충분한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치료 이용을 필요로 합니다. 이 추가 부담금은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급박한 요구 사항을 해결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도합니다. \$1,340만 가치에 달하는 주택만 \$2,000가 인상되게 되고 중간값의 주택 소유주는 연간 약 \$120를 납부하게 됩니다.

유권자가 승인한 세입 한도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부담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 건강, 청소년, 안전한 지역사회 및 중독 회복에 앞장서는 기업과 옹호자들은 발의안 제1 호를 지지합니다.

설명 진술	이 법안에 관한 문의 연락처: Dan Floyd, 부국장, 행동 건강 및 회복 부서, (206) 263-8961, Daniel-DCHS.Floyd@kingcounty.gov
발의안 제1호는 지역 행동건강서비스 및 자본 시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의 부동산세 추가 부담금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 추가 부담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기치료센터 5 곳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행동건강위기를 겪는 사람들의 현장 평가 및 부상자 분류 서비스와 현장 안정화 역량을 제공하는 행동건강 긴급 진료소가 포함됩니다. 이 센터들 중 최소 1곳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추가 부담금은 또한 다음 두 가지 지원 목적인 (1) 킹카운티 내 정신건강 상주치료 병상의 수를 최소 355 병상으로 복원하고 상주 치료의 가용성을 확대 (2) 행동건강 인력의 지속가능성과 대표성 증대에 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실행 계획에서 확인된 경우, 추가 부담금은 주요 지원 목적에 부수적이며 이에 부합하는 추가 목적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 및 유지하는 그 밖의 지역 행동건강서비스 및 자본 시설도 추가 부담금 자금 지원의 수혜 대상이 되게 됩니다. 추가 부담금은 2024년부터 구 년간 지속됩니다. 첫째 세율은 전년도 평가 가치의 일천 달러(\$1,000)당 \$0.145로 제한됩니다. 첫째에 징수된 추가 부담금의 달러 금액은 2025-2032년까지 연간 증액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RCW 제84.55장에 의해 제한됩니다. 적절한 연장자, 재향군인 및 장애인은 RCW 84.36.381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1호는 실행 계획과 자문 기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반대 진술	제출자: Jim Coombes, Suzie Burke, Tim Eyman VoteNoKCProp1@gmail.com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정치인들(공화당원 그리고 민주당원)은 우리를 조종하는 데 능수능란한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기존 세금을 자신들이 선호하는 프로젝트에 사용한 다음, 필수 서비스에 투표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속임수입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우리가 걸려 들면 정치인들은 이를 다시 악용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막대한 수요와 제한된 공급으로 인한 폭발적인 가치 상승으로 인해 현재 산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료 인상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주택 비용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1호의 \$2000 세액 인상(평균치)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치인들은 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막대한 세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이들은 이미 이 프로그램에 대해 막대한 세수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정부는 세금을 41배 인상하여 납세자들에게 \$623억의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https://tinyurl.com/64-Billion-41-Tax-Increases). 이는 미국(주/지방)에서 가장 높은 판매세, 가장 높은 가스세, 직원세, 공공요금세, 사업세 및 수많은 비용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과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연방 긴급구제금융으로 수십억 달러를 더 쟁했습니다. 반대 투표 행사는 정치인들이 지출의 우선순위를 기존 세입을 사용하여 정하도록 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을 구제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들이 우리를 꼬임에 넘어가도록 부추기는 공산에 불과합니다. 반대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찬성 진술에 대한 반증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막대한 \$2000 세금 인상은 그 어디에도 특정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는 속임수입니다. 당연히 세금은 전용될 수 없습니다. 일단 세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어디에든 지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부 비자금이 됩니다. 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이 필수라고 생각해도 그들은 이미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반 가정이 그러하듯이) 기존 세입을 이용하여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발의안 제1호
보건 서비스 추가부담금 규제 해제

킹카운티, 워싱턴, 공립 병원 제4지구(스노퀄미 밸리 (Snoqualmie Valley) 병원) 위원회가 지역구의 일반 부동산세 추가부담금 인상에 관한 결의안 제690-0123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발의안이 승인되면, 기본 의료 서비스, 전문 의료 서비스, 긴급 의료 서비스, 재활 서비스 및 기타 보건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해 추가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2024년에 징수되는 최대 일반 부동산 추가부담금 비율을 \$0.70/ 감정 가격 \$1,000으로 재가합니다. 2024년 추가 부담 금액은 이후 추가부담금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발의안을:

승인합니다
거부합니다

이 발의안 전문은 선거국 사무실 또는 온라인 kingcounty.gov/elections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찬성 진술	제출자: Robert Angrisano rangrisano@gmail.com
우리 지역의 병원 지구에 투자하는 것은 스노퀄미 밸리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추가 부담금이 통과되면 스노퀄미 밸리 의료 (SVH)는 응급실 확장; 낙후된 CT 및 MRI 스캐너 교체; 실험실 및 방사선과 서비스 확대; 방사선과에 유방조영술을 추가하여 중요한 여성 건강 서비스 확대, 모든 연령대를 위한 행동건강서비스 증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부담금 인상이 통과되면 SVH는 새로운 세액 공제 정책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구 납세자는 수혜를 받는 SVH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의 형태로 병원 지구에 납부된 모든 추가 부담금 세금을 100%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주가 병원 추가 부담금 세금으로 \$500 를 납부하는 경우, SVH 소속 네트워크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미지급 잔액 및/또는 공제액에 해당 전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된 병원세 전액을 완전히 상쇄하는 놀라운 혜택입니다. 요약하면, 이 추가 부담금은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현명한 투자이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료를 지역적, 독자적으로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반대 진술에 대한 반증

법에 따라 세수는 매년 1%만 인상됩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 부담금은 이사회 위원 5명 중 4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하에 병원은 팬데믹에 대응했고, 심장 치료를 개선했고, 긴급 진료를 개시했고, 행동 건강을 추가했으며, 응급실 인력 충원을 위해 의료진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병원에 납부한 세금 100%는 자기부담금을 상쇄하는 크레딧이 될 것입니다. 팩트 체크: https://snoqualmiehospital.org/levy2023/

설명 진술	이 법안에 관한 문의 연락처: Sherry Jennings, 업무 및 전략 보도 국장, (425) 831-3070, sherryj@snoqualmiehospital.org
킹카운티 공립 병원 제4지구(이하 “지구”)는 스노퀄미 밸리 (Snoqualmie Valley) 병원과 기본 의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구 주민들에게 병원 및 그 밖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구 이사회는 기본 의료 서비스, 전문 의료 서비스, 긴급 의료 서비스, 응급 의료 서비스, 재활 서비스, 그 밖의 의료서비스 및 시설을 포함하여 지구 주민과 지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타 당사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일반 부동산세 추가 부담금의 증액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구 주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부터 일반 부동산세 추가 부담금을 감정가격 \$1,000당 25센트에서 감정가격 \$1,000당 70센트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추가 부담금이 감정가격 \$1000 당 약 45센트 증액되면 해당 지구의 감정가치 \$500,000 상당의 주택의 경우 월 \$18.75로 증액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액된 추가 부담금은 지구의 의료 시설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 개발 및 확장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2024년도 추가 부담금 금액은 이후 지구의 추가 부담금 한도 산정 목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반대 진술	제출자: Gary Norris gary.norris@comcast.net
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은 세금을 인상할 때가 아닙니다. 현재 추가 부담금으로 발생한 세금은 지역구의 부동산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고령층, 젊은 가족, 고정 소득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위원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병원 행정 상의 금융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주민들이 선출한 SVH 위원회의 20%는 추가 부담금 한도 인상안에 반대합니다. 추가 부담금 한도안은 킹카운티 연간 재산세에서 SVH의 부담분이 \$.25/ 감정가격 \$1,000에서 \$.70/감정가격 \$1,000로 187% 인상되며 급격히 증가될 것입니다. SVH 제4 지구는 지역구 주민의 의료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주민들의 의료 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밸리 주민들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병원 행정측은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들의 비율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상당한 의학적 필요 상황을 겪었습니다. 각 경우마다, SVH에서 제 필요 사항들을 이행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버레이크 (Overlake)나 스웨디시(Swedish)로 의뢰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반대표를 행사합니다!	

찬성 진술에 대한 반증

SVH 4는 지구 주민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 지구 주민들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확인된 서비스 추가를 원하거나 필요로 함을 시사하는 정보는 없습니다.

지구는 주민이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부동산세 가치를 환급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환급해 줄 의향이라면 왜 애초에 세금을 걷어잡니까? 지금은 추가 세금을 낼 때가 아닙니다.

킹카운티 조례 제19572호 전문

2023년 4월 25일, 킹카운티에서 실시되는 특별 선거에서 킹카운티의 적격 유권자들에게 제출 용도로 제공되는 법령으로, 연속 9년간 RCW 84.55장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 부담금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세 추가 부담금을 허가하는 발의안이며, 2024년부터 징수가 시작되는 첫해 부담금율은 평가액 \$1,000당 \$0.145를 넘지 않으며, 2024 부담금 금액은 2차 연도부터 9차 연도 기간(2025~2032) 동안 RCW 84.55장 개정안에서 정하는 제한 계수를 적용해 인상분을 계산하는 출발 금액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자본 시설을 위한 것으로 행동 건강 위기 관리 센터 지역 네트워크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입주 치료 시설을 보존, 확장 및 유지하며, 행동 건강 인력 지원을 제공하고, 이동식 위기 관리 및 퇴원 후 안정화를 제공하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비용을 지불,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재조달하며, 추가 부담금의 시행, 조율, 실시 및 평가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 진술:

1. 킹카운티의 행동 건강 위기 서비스 시스템은 전화 지원 및 복지 연락 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갈 수 있는 장소 선택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2. 2022년 9월 현재, 다운타운 응급 서비스 센터가 운영하고 있고 이동 팀, 응급 의료요원 또는 입원을 위한 병원 의뢰가 필요한 위기 해결 센터가 킹카운티 전체에서 유일한 자발적 행동 건강 위기 시설이며, 킹카운티 내에는 비예약 긴급 치료 행동 건강 시설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3.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행동 건강 기관 연합은 2021년 10월 13일자 서한을 통해 시애틀과 킹카운티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대” 및 “위기 대응의 확대 및 위기 이후 추적 서비스의 확대”라는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킹카운티 지역 행동 건강 위기 라인으로 걸려온 통화량은 2019년 82,523통에서 2021년 102,754통으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25% 증가했습니다.

5. 연간 킹카운티 내에서 지역사회 기반 행동 건강 위기 대응 서비스를 받은 사람 수는 2012년 1,764명에서 2021년 4,336명으로 2012년에서 2021년 사이에 146% 증가했습니다.

6. 킹카운티 이동 위기 연락에 대한 의뢰 건수는 2019년 4,030건에서 2021년 4,648건으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15% 늘어났습니다.

7. 킹카운티의 지정 위기 대응 담당자들이 비자발적 행동 건강 치료에 대해 실시한 조사 건수는 2017년 8,066건인데 비해 2021년 조사 건수는 9,189건으로 1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자발적 입원을 위한 구금 또는 취소는 2017년 4,387건에서 2021년 4,806건으로 10% 증가했습니다.

8. 지역사회 환경에서 행동 건강 위기 상황에 처한 킹카운티 거주자가 비자발적 행동 건강 치료를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한 시간은 2019년 1월 기준 4일에서 2022년 6월 기준 12일로 3배 늘어났습니다.

9. 미국 보건복지부는 전국 988 자살위기 라이프라인이 출범 후 한 달 내내 운영된 첫 번째 달인 2022년 8월 기준으로, 2021년 8월에 접수된 전국 자살방지 라이프라인 연락 건수 대비 전체적인 통화, 문자 및 채팅량이 152,000회(45%)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0. 연방 물질남용 정신건강 서비스부서(SAMHSA)의 행동 건강 위기 관리를 위한 국가 지침과 신설된 전국 988 자살 위기 라이프라인의 출범을 위한 비전에서는 효과적인 행동 건강 위기 시스템의 일환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의 설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1. 2021년, 워싱턴주 입법부는 워싱턴에서 988의 시행을 뒷받침하며, SAMHSA의 전반적인 비전을 발전시키고 위기 서비스를 확대 및 변화시킴으로써 위기 전화 변화를 시행하기 위해 하원을 통과한 두 번째 대치 법안 1477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2021 워싱턴 주법 302장이 되었습니다.

12. RCW 71.24.025는 위기 안정화 서비스를 거실 모델에 기반한 23 시간 위기 안정화 유닛, 위기 안정화 센터, 단기 휴식 시설, 동료 운영 휴식 서비스 및 행동 건강 긴급 치료 비예약 센터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병원 응급 부서처럼 운영되면서 모든 비예약 환자, 구급차, 소방서 및

경찰 환자 접수를 받는 전체적인 위기 시스템 구성 요소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2021 워싱턴 주법 302장에는 그러한 구성 요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행동 건강 위기 전달 시스템을 확대하고자 하는 주 입법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13. 다중 행동 건강 시스템 요구 사항 평가에서 킹카운티 내 지역사회 기반 위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위기 시설의 추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는 2016년 발의 14225에 의해 촉구된 보딩 태스크포스에 대한 지역사회 대안의 권고안, 2018년 워싱턴주 재정 관리실의 행동 건강 자본 조달 우선 순위 및 타당성 조사, 2019 년 워싱턴주 의료당국의 위기 분류 및 안정화 역량과 격차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4. 킹카운티는 운영 비용 상승과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노후 시설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신 건강 입주 치료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킹카운티에는 전체 카운티가 이용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입주 시설 침상 수가 총 244개로, 2018년에 355개였던데 비해 111개가 줄어 거의 1/3이 감소했습니다.

15. 2022년 7월 기준으로, 정신 건강 입주 서비스가 필요한 킹카운티 주민들은 입주 시설에 들어가려면 평균 44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16.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 미국 인구통계청 및 카이저 가족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미국 성인 10명 중 3명꼴로 불안 또는 우울 장애 증상을 보고했는데, 이는 성인 10명 중 1명이 이러한 증상을 보고했던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입니다.

17. 전국 정신건강 이사회의 2022년도 진료 접근성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신 건강 또는 물질 사용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 미국 성인 중 43%가 해당 진료를 받지 못했으며, 필요한 치료를 이용하고 받는 것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8. 워싱턴주 사회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 건강 요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킹카운티 내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성인의 경우 약 34%, 아동청소년의 경우 9% 증가했습니다.

19. 워싱턴주 사회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킹카운티 내 메디케이드 가입자 중 정신 건강 요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성인의 거의 절반, 아동청소년의 경우 1/3 이상이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20. 워싱턴주 사회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킹카운티 내 메디케이드 가입자 중 물질 사용 장애가 확인된 성인의 약 62%, 아동청소년의 경우 약 80%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21. SAMHSA의 행동 건강 위기 관리를 위한 국가 지침에서는 위기 대응 팀에 정신 건강 질환 또는 물질 사용 장애에 대한 실제 경험이 있는 동료를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에서는 동료가 참여하는 위기 서비스 제공 혁신의 예로 거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2. 2021 킹카운티 비영리 임금 및 복지후생 설문조사 결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비영리 단체 직원들이 이 지역에서 지역사회 기반 일을 하면서 직업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3. 킹카운티 통합 치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년 킹카운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사회 행동 건강 기관의 공석 수가 2019년 대비 최소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공 기관들은 직원들이 지역사회 행동 의료 서비스 기관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전문가들이 의료 시스템이나 개인 병원에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킹카운티 지역의 생활비가 높은 사실을 꼽았습니다.

24. 워싱턴주 근로자훈련 및 교육조율 이사회의 행동 건강 근로자 자문 위원회는 2021년에 워싱턴주가 계속해서 행동 건강 전문 인력 부족에 직면한 반면, 행동 건강 서비스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문 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지역사회 행동 건강 관리 기관에 계속 남으려면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킹카운티 의회에서 제정함:

제1절. 정의. 본 절의 정의는 문맥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본 법령 전체에 적용된다.

A. “위기 관리 센터”는 다양한 유형의 행동 건강 위기 안정화 서비스를

단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단일 시설 또는 여러 시설 그룹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개정된 RCW 71.24.025(20)에 기술된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위기 관리 센터는 행동 건강 위기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접수를 받아 최소한 최초 검사 및 분류를 실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위기 관리 센터가 제공해야 하는 행동 건강 위기 안정화 서비스의 유형에는 하루 24시간, 주 7일 비예약 및 응급 수송 고객 검사 및 분류를 제공하는 행동 건강 긴급 치료 클리닉, 지정된 위기 대응 담당자의 현장 평가 이용, 행동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단기 현장 안정화를 제공하는 23시간 관찰 유닛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서비스, 그리고 최대 14일간 단기 현장 행동 건강 치료를 제공하는 위기 안정화 유닛 또는 유사한 단기 행동 건강 치료 시설 및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위기 관리 센터 근무 인력 중에는 동료 상담사가 포함되어 있는 다분야 팀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 관리 센터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운영 방식이 본 정의에 부합된다는 전제 하에 위기 안정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시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기 관리 센터가 여러 개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시설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그 사이에 교통편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B. “지정된 위기 대응 담당자”는 개정된 RCW 71.05.020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C. “킹카운티 위기 대응 구역”은 킹카운티를 구성하는 4개의 지리적 소구역 각각을 의미합니다.

1. 킹카운티 중 바슬, 두발, 켄모어, 커크랜드, 레익 포레스트 파크, 쇼어라인, 스카이크미쉬 및 우든빌시 경계 내에 위치한 부분, 그리고 본 법령의 발효일에 그려진 대로 레드몬드시의 북쪽 내지 북동쪽에 있는 킹카운티 의회 3지구 내 비병합 지역을 합한 노스 킹 카운티 위기 대응 구역.

2. 킹카운티 중 시애틀시 경계 내에 위치한 부분, 그리고 본 법령의 발효일에 그려진 대로 킹카운티 의회 2지구 및 8지구 내 비병합 지역을 합한 센트럴 킹 카운티 위기 대응 구역.

3. 킹카운티 중 알고나, 어번, 블랙 다이아몬드, 브리엔, 커빙턴, 디모인스, 이념클라, 페더럴웨이, 켄트, 메이플 벨리, 밀톤, 노르만디 파크, 퍼시픽, 렌튼, 시택 및 터쿼라시 경계 내에 있는 부분, 그리고 본 법령의 발효일에 그려진 대로 킹카운티 의회 5지구, 7지구 및 9지구 내 비병합 지역을 합한 사우스 킹 카운티 위기 대응 구역.

4. 킹카운티 중 브아트, 벨뷰, 카네이션, 클라이드힐, 헌츠 포인트, 이사쿠아, 머다이나, 밀서 아일랜드, 뉴캐슬, 노스 밴드, 레드몬드, 사마미쉬, 스노쿼미 및 야로우 포인트시 경계 내에 있는 부분, 그리고 본 법령의 발효일에 그려진 대로 레드몬드시의 동쪽 내지 남동쪽에 있는 킹카운티 의회 3지구 내 비병합 지역, 그리고 본 법령의 발효일에 그려진 대로 킹카운티 의회 6지구 내 비병합 지역을 합한 이스트 킹 카운티 위기 대응 구역.

D. “추가 부담금”이란 본 법령에서 정하고 주 법률에 따라 유권자가 허가한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부과되는 일반 재산세의 추가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E. “추가 부담금 수익금”은 추가 부담금으로 모이는 돈의 원금과 그 돈에 생기는 이자 수익, 그리고 일체의 중간 수익금 또는 추가 부담금이 허가된 이후 이루어지는 기타 자금 조달액을 의미합니다.

F.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자본 시설”은 정신 건강 및 웰빙을 촉진하고 물질 사용 장애 및 정신 건강 질환을 치료하며, 통합된 신체 및 행동 건강을 촉진하고, 행동 건강 위기에 대한 치료적 대응을 촉진 및 제공하며,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및 결과에 있어 격차를 경험하는 인종적, 민족적, 경험적 및 지리적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 및 자본 시설에 대한 공평하고 포용적인 접근성을 촉진하며,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 제공자들의 서비스 및 운영의 효과성, 효율성 및 공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공자들의 역량을 구축하며, 정신 건강 또는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를 받거나,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료 시설까지 교통편을 제공하고, 정신 건강 또는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거나 시설에서 나가는 사람들의 주거지 안정성을 촉진하고, 응급의료요원,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치료 제공자들

킹카운티 선거국은 성명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으며 그 내용에 대한 책임 또한 없습니다.

및 킹카운티 직원들 간의 서비스 및 대응 조율,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 통합을 촉진하고, 관련 실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추가 부담금 활동에 참여하고, 직장에서 그러한 참여에 따른 보수를 이미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 지급을 포함해, 추가 부담금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추가 부담금 활동을 시행, 조율 및 평가하고, 추가 부담금 수익금을 보충하기 위해 연방, 주 및 자선 기부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며, 행동 건강 인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운영, 인력 배치 및 자본 시설을 의미합니다.

G. “입주 치료”는 정식 면허를 받아 정신 건강 질환, 물질 사용 장애 또는 둘 다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 환경에서 24시간 현장 치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H. “전략”은 본 법령 제4절에 기술되어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이니셔티브 또는 자본 투자를 의미합니다.

I. “기술 지원 및 역량 구축”은 조직이 추가 부담금으로 총당되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추가 부담금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 또는 전략들의 전달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행동 건강 질환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지역사회에 전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에 도움을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2절. 추가 부담금 제출. 킹카운티 의회는 본 법령의 제4절에 명시된 목적에 기금을 지원하거나 자금을 조달 또는 재조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연속 9년간 RCW 84.55장에 규정된 추가 부담금 한도를 초과하는 일반 재산세 부과를 승인하는 제안서를 카운티의 적격한 유권자들에게 제출해야 하며, 평가 가치 \$1,000당 \$0.145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2024년에 징수가 시작됩니다. 첫해 추가 부담금의 달러 금액은 개정된 RCW 84.55장의 한도 계수를 사용해 2년 차부터 9년 차까지(2025~2032년) 기간 동안 허용되는 최대 추가 부담금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3절. 추가 부담금 수익금의 예치. 추가 부담금 수익금은 위기 관리 센터 기금 또는 그 승계자에게 적립됩니다.

제4절. 추가 부담금 목적.

A. 추가 부담금의 최우선적 목적은 킹카운티 내에 5개의 위기 관리 센터로 구성된 지역 네트워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며, 4개의 킹카운티 위기 대응 구역에는 각각 하나 이상의 위기 관리 센터, 5개의 위기 관리 센터 중 하나 이상은 19세 미만인 사람들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B. 추가 부담금의 첫 번째 부차적 목적은 킹카운티 내의 정신 건강 입주 치료 침상 개수를 최소 350개로 복원하고, 킹카운티 내 입주 치료의 가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C. 추가 부담금의 두 번째 지원 목적은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늘리고, 임금 인상, 수습생 프로그램, 그리고 가능한 경우 행동 건강 교육 및 인종과 관련된 보험 비용, 아동 돌봄, 간병 및 수수료 또는 수업료 등 비용 절감을 통해 행동 건강 종사자들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함으로써 킹카운티 내 행동 건강 종사자들의 지속가능성 및 대표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추가 부담금의 최우선적 목적의 일환으로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자본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행동 건강 종사자들을 위한 임금 인상 및 비용 절감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지역 행동 건강 종사자들의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촉진할 것입니다.

D. 본 법령의 제7절에서 요구하는 추가 부담금 시행 계획에는 추가적인 지원 목적이 최우선적 목적, 그리고 본 절의 하위 절 A부터 C에 기술되어 있는 지원 목적 1과 2에 어긋나지 않고 부차적이라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지원 목적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제5절. 요건 충족 지출.

A. 카운티의 적격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는 경우, 첫해 추가 부담금 수익금 합계 금액은 필요에 따라 선거로 인해 카운티에 발생한 비용 및 청구액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1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첫해 추가 부담금 수익금은 초기 추가 부담금 시행 계획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본 절의 하위 절 A에서 승인된 금액 지출 후 남은 추가 부담금 수익금은 킹카운티가 본 법령의 제7절에서 요구하는 시행 계획을 채택하는 법령을 제정할 때까지 지출할 수 없습니다. 추가 부담금 시행 계획 및 개정안을

킹카운티 조례 제19572호 전문

고려 및 채택하기 위한 의회 절차에는 지역 정책 위원회 또는 그 승계 조직에 대한 의무적 의뢰가 포함됩니다. 킹카운티가 추가 부담금 시행 계획을 채택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나면 추가 부담금 수익금은 개정된 시행 계획과 본 법령에 따라 지출됩니다.

C. 본 절의 하위 절 B에서 기술하고 있는 추가 부담금 수익금은 다음 항목에 기금,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재조달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1. 제4절에 기술되어 있는 추가 부담금의 최우선적 목적, 지원 목적 1 및 지원 목적 2를 달성 및 유지하는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자본 시설, 그리고 시행 계획에 추가 기술되어 있을 수 있는 항목을 계획, 장소 선정, 건설, 인수, 복원, 유지 운영, 시행, 인력 배치, 조율, 시행 및 평가합니다.

2. 시행 계획에 추가적인 추가 부담금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목적이 최우선적 목적 및 지원 목적 1 및 2에 부차적이고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 및 유지하는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자본 시설, 그리고 시행 계획에 추가 기술되어 있을 수 있는 항목을 계획, 장소 선정, 건설, 인수, 복원, 유지 운영, 시행, 인력 배치, 조율, 시행 및 평가합니다. 그리고

3. 킹카운티의 도시 공원 지구, 소방 지구 또는 지역 공공 병원 지구에서 제공하는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자본 시설에 대해 RCW 84.52.010 에 의무 사항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비례 배분의 명백한 원인이며 카운티 의회가 법령에 따라 지출을 승인한 경우에 한해 비례 배분을 통해 개발 지구에 최대 손실 수익금 금액까지 금액을 제공합니다.

D. 본 절의 하위 절 C에서 달리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추가 부담금 수익금은 구치소, 교도소, 법원, 형사 기소, 형사 변호 또는 법 집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행동 건강 목적을 위해 자금 제공, 대신, 대체 또는 확대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위기 관리 센터 내부에서나 다른 의료 서비스 환경 사이에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자본 시설을 제공 또는 조율하거나 영장을 파기하는 것처럼 행동 건강 서비스를 받는 데 대한 장애물을 없애거나 줄이는 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본 하위 절의 내용 중에는 법집행 기관 또는 다른 응급의료요원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 마주치는 사람을 위해 위기 관리 센터와 조율하고 센터를 이용 및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막거나, 지연시키는 내용으로 해석 또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6절. 특별 선거 요구. 킹카운티 의회는 이로써 RCW 29A.04.321에 따라 본 법령에 기술하고 있는 목적을 위해 일반 재산세 추가 부담금을 승인하는 발의안을 고려하기 위해 2023년 4월 25일에 특별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킹카운티 선거국장은 주 헌법과 일반 법률에 의거해 본 법령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고, 상기 특별 카운티 선거에서 다음에 기술되어 있는 발의안을 카운티의 적격 유권자들에게 제출합니다. 의회 서기는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을 사용해 선거국장에게 해당 발의안을 증명해야 합니다.

발의안____: 킹카운티 의회는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를 위한 자원 조달과 관련해 법령 _____을(를) 통과시켰습니다. 승인되는 경우 이 발의안은 카운티 전체 위기 관리 센터 네트워크, 더 많은 입주 치료, 이동 위기 관리, 퇴원 후 안정화 및 종사자 지원 등을 포함해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자본 시설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2024년 평가 가치 \$1,000당 \$0.145부터 시작해 추가적으로 9년간의 재산세 추가 부담금 징수를 승인하게 되며, 2024년 추가 부담금 금액은 RCW 84.55장에 따라 2025~2032년 기간 중 매년 인상분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적격 고령자, 재향 군인 및 장애인은 RCW 84.36.381에 따라 면제됩니다. 본 발의안을:

승인하시겠습니까? _____

거부하시겠습니까? _____

제7절. 시행 계획.

A. 유권자들이 추가 부담금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의회 검토 및 법령에 의한 채택을 위해 추가 부담금 시행 계획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 계획 제안서에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추가 부담금 지출처를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B. 행정부는 본 절의 하위 절 A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 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의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기는 원본을 보관하고 의회 의원 전원, 의회 총 책임자, 정책 직원 책임자 및 법률, 사법,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위원회 및 지역 정책 위원회 수석 또는 그 승계자에게 모두 전자

사본을 전송해야 합니다. 시행 계획에는 시행 계획을 채택하고 자문 조직을 구성 또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 발의안이 첨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은 본 절의 하위 절 C.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C. 하위 절 A에서 요구하는 시행 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추가 부담금의 목적에 대한 목록과 설명은 최소한 본 법령의 제4절에 기술되어 있는 최우선적 목적 및 지원 목적 1 및 2를 포함해야 하며 해당 목적의 달성을 실질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 본 절의 하위 절 C.1.에 기술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전력 및 허용되는 활동 목록과 설명, 이러한 전략은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위기 관리 센터를 위한 계획, 자본, 운영 및 서비스 투자. 여기에는 건물의 신축 또는 기존 건물의 매입, 전체 또는 부분적인 개조, 보수 또는 확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 정신 건강 입주 치료 역량을 위한 자본 및 유지관리 투자.

c. 행동 건강 종사 인력의 유인, 고용 유지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d. 추가 부담금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활동의 지속성을 촉진하고 추가 부담금 수익 또는 전략 비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최우선적 목적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그런 다음 지원 목적 1 및 2를 위해 지출할 수 있도록 추가 부담금 및 자본 예비금의 확보 및 유지.

e. 추가 부담금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서비스를 받거나 그러한 시설에서 퇴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성을 포함한 위기 이후 안정화를 촉진하는 활동.

f. 행동 건강 위기를 겪거나 위험 상태인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는 이동식 및 현장 기반 행동 건강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위기 관리 센터의 운영 개시 이전에 추가 부담금의 첫 기간을 위한 계획.

g. 킹카운티에서 행동 건강 질환의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인종, 민족 및 기타 인구통계 집단을 위해 추가 부담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시설에서 포용적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 또는 전략들을 포함해, 추가 부담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조직들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수용 능력 구축.

h. 자본 시설 장소 선정 지원, 소통 및 시 파트너십 활동.

i. 추가 부담금 시행 활동 및 위기 관리 센터 내부 및 센터, 킹카운티 내 여타 행동 건강 위기 대응 서비스 및 응급의료요원들 간의 보다 효과적인 위기 대응 및 치료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활동. 그리고

j. 성과 측정 및 평가 활동.

3. 본 절의 하위 절 C.1. 및 2.에 기술되어 있는 목적 및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자본 시설을 위한 수익금의 사용을 지시하는 재정 계획으로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추가 부담금의 각 연도 대한 연간 수익금 예측치.

b. 추가 부담금 전략들 사이에 추가 부담금 예측 수익을 할당하기 위한 추가 부담금의 각 연도에 대한 연간 지출 계획.

c. 추가 부담금의 최우선적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5개 위기 관리 센터 지역 네트워크 수립 및 운영 활동 및 지출 계획의 순서 및 시점에 대한 기술.

d. 지원 목적 1 및 2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초기 진척을 이루기 위해 첫째 추가 부담금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

4. 추가 부담금의 최우선적 목적과 지원 목적 1과 2의 달성을 가속화, 향상, 보완 또는 지속하기 위해 추가 부담금의 수익금이 아닌 연방, 주, 자선 기부금 및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행정부가 어떻게 확보하고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명.

5. 재정 계획에서 메디케이드 자금의 역할에 대한 행정부의 가정과 요건을 충족하는 위기 관리 서비스를 메디케이드, 또는 개인 보험 같은 잠재적 지불원에 청구하는 행정부의 계획된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

6. 킹카운티 및 파트너 도시가 해당 시설의 건설 또는 인수를 위해 추가 부담금 수익금을 사용하는 새로운 자본 시설의 장소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7. 시행 계획 제안서에 사용된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와 절차에 대한 주요 결과 요약.

8. 본 절의 하위 절 C.3.에서 요구하는 재정 계획에 대한 중대한 변동 사항을 적용하는 절차. 이러한 절차에서는 의회에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중대한 변동 사항은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제공합니다.

9. 추가 부담금을 위한 자문 조직의 구성, 의무 및 수립 절차에 대한 기술. 자문 조직은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존의 킹카운티 이사회 또는 위원회, 또는 새로운 자문 조직 될 수 있습니다. 자문 조직은 인구통계적 측면에서 킹카운티 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각 킹카운티 위기 대응 구역을 대표하는 주민 최소 1인, 위기 안정화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행동 건강 위기 관리 제공과 관련한 전문적 훈련 및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문 조직의 임무에는 추가 부담금의 시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행정부 및 의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매년 각 기존 위기 관리 센터를 방문하며, 2025년부터 시작해 본 법령의 제4절에 기술되어 있는 추가 부담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전 연도 대비 진척 상황, 본 절의 하위 절 C.3.에서 요구하는 재정 계획과 비교해 이전 연도의 실제 추가 부담금 재정 지출에 관해 온라인 연차 보고서를 통해 연 단위로 의회와 지역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킹카운티의 우편번호에 따른 위기 대응 구역, 전략 및 추가 부담금 목적별 추가 부담금 수익 총 지출액. 그리고

b. 위기 대응 구역, 전략 및 추가 부담금 목적에 따라 추가 부담금 지원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수를 서비스 당시 개인이 거주하던 킹카운티 우편번호별로 확인.

10. 행정부가 보고서 수령을 확인하는 제안된 동의안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것이라는 확인을 포함해 행정부가 본 절의 하위 절 C.9.에서 기술하고 있는 각 온라인 연차 보고서를 의회 서기, 의회 의원 전원 및 지역 정책 위원회 위원 및 대리 위원 전원, 또는 그 승계인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11. 본 추가 부담금에 기술된 위기 대응 구역의 목적은 킹카운티 전체에 걸쳐 비예약 및 응급 수송 위기 관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기 관리 센터의 지리적 분산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위기 관리 센터가 킹카운티 주민이 특정 위기 관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

제8절. 위기 보호 센터의 정의 수정. 새로운 연구, 모범 방식의 변화, 새롭게 바뀐 연방 및 주 규정 또는 그 외 증거 기반 요인들로 인해 “ 위기 관리 센터”에 대한 본 법령의 정의가 그 타당성, 실용성 또는 추가 부담금의 최우선적 목적에 대한 부합성을 상실하는 경우, 킹카운티는 본 법령 7.C.9.절에서 정하는 자문 조직의 권고를 받고 지역 정책 위원회에 대한 의무적 의뢰를 진행함으로써 법령의 채택을 통해 자문 조직이 권고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9절. 면제. 본 법령에 따라 승인된 추가적인 일반 재산세는 RCW 84.36.381이 허가하는 모든 부동산세 면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0절. 비준 및 승인. 2023년 4월 25일 특별 선거 이전 법에 따라 카운티 의회 서기가 선거국장에게 발의안을 증명하는 것과 그 외에 해당 권한에 부합되고 본 법령 발효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다른 조치는 이로써 비준 및 확정됩니다.

제11절. 분리 가능성. 본 법령의 조항 또는 특정 개인 또는 상황에 대한 그 적용이 무효한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본 법령의 나머지 부분 또는 다른 개인들 또는 상황들에 대한 해당 조항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킹카운티 선거국은 성명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으며 그 내용에 대한 책임 또한 없습니다.

킹카운티 선거국은 어떤 경우에도 발의안 진술서를 번안, 편집 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술서는 위원회가 제출한 그대로 매우 한정된 시간 안에 직역되므로 간혹 번역된 진술서의 표현, 언어, 견해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